

【 5 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제의년월일 : 1995. 12. 7.

제 의 자 : 의 장

□ 주 문

'96년도 예산안 및 '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할 것을 결의함.

□ 제안이유

양주군수가 제출한 1996년도 예산안 및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를 위하여 양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결특위를 이홍규, 이상원, 박영원, 홍제룡, 유재원, 김광배, 김영안의원 등 7인으로 구성 운영하려는 것임.

【 6 】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1995. 12. 20.

제 안 자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□ 수정이유

199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예산이 합리적, 합목적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별첨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안을 예결특위안으로 의결코자 제출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